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2026. 4.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6-51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6년 4월 8일(수)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6년 4월 15일(수)

2. 제출사유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착한가격 업소의 영업부담을 완화하여 지역물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호)
-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 확대(안 제6조 제2~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3. 5. ~ 3. 25.(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검토보고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착한가격업소 현황

- 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5.22.)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총 1,98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업종별 지정현황 >

자치단체	합계	비율(%)	외식업	기타	순위	자치단체	합계	비율(%)	외식업	기타	순위
마포구	75	3.79	46	29	12						
종로구	54	2.75	40	14	19	서대문구	110	5.56	74	36	4
중구	41	2.07	35	6	22	양천구	50	2.53	28	22	21
용산구	73	3.54	65	8	15	강서구	101	5.11	61	40	5
성동구	39	1.92	28	11	23	구로구	111	5.61	75	36	3
광진구	86	4.35	49	37	10	금천구	80	4.00	58	22	11
동대문구	99	5.01	93	6	6	영등포구	89	4.50	67	22	8
중랑구	72	3.59	44	28	14	동작구	158	7.99	106	52	2
성북구	67	3.39	47	20	17	관악구	169	8.55	109	60	1
강북구	37	1.87	18	19	24	서초구	37	1.87	31	6	25
도봉구	72	3.64	44	28	13	강남구	94	4.75	88	6	7
노원구	60	3.03	41	19	18	송파구	90	4.45	58	32	9
은평구	68	3.44	52	16	16	강동구	55	2.78	34	21	20
계	1,981	100	1,385	596	-						

- 마포구는 총 7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체 1,981개소 대비 약 3.79%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 중 12위 수준임.

<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업종별 지정현황¹⁾ >

(2026년 3월 31일 기준)

계	한식	요식업(한식 외)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서비스업
75	35	6	23	1	10

1) 마포구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46개소(61.3%), 기타 개인서비스업 29개소(38.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평균(외식업 69.9%, 기타 30.1%) 대비 외식업 비중은 다소 낮고 기타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임. 전반적으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규모는 서울시 평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업종 구성 측면에서는 외식업 중심 구조에서 다소 벗어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외식업 분야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업종 분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포구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을 보면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물품 중심의 지원²⁾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2025년에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발굴과 함께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교체, 위생설비 개선 등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³⁾하여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존 물품 지원 중심에서 시설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번 조례 개정은 기존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주요 내용

(1) 조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호)

- 제6조제1호 중 “표지판”을 “표찰”로 정비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u>표지판</u> 제작·교부	제6조(지원) ----- ----- ----- 1. ----- <u>표찰</u> ----- -----

2) 2025년 마포구 지원 물품 실적

- 종량제봉투: 49,410장 / 34,842천원
- 필요물품(5종): 6,666개 / 30,246천원

3) 한강타임즈(2025.6.23.):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발굴... “최대 400만원 인센티브 지원”

(2)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 확대(안 제6조 제2~5호)

- 기존 소모품 보급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여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신 설> <신 설>	제6조(지원) ----- ----- -----. 2. ----- ---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 4.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

(3) 조문 체계 정비

- 착한가격업소 홍보 관련 규정이 다른 조항(제5조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3. 마포구 소식지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제6조(지원) ----- ----- -----. <삭 제>

(4) 조문 형식 정비

- 지원 항목 신설에 따라 각 호의 번호를 정비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p> <p>4. <u>방역물품</u> 및 소독 지원</p> <p>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지원) ----- ----- -----.</p> <p>3. <u>방역물품 보급</u> ----- -(제4호에서 이동)</p> <p>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p>

(5) 부칙 조항(경과조항 신설)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개정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p>

라.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용어(표찰)와 지원 사업을 관련 지침 및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공공요금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은 다수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⁴⁾으로,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정책 수혜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지역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 지역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요금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붙임1) 타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

- 공공요금 지원(5개 구): 종로, 동대문, 성북, 영등포, 관악

- 소규모환경 개선 지원(18개 구):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붙임 1

타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자치단체	물품 지원	공공요금 지원	소규모환경 개선	홍보지원	기타
마포구	65,088	-	4,000	-	-
종로구	29,649	11,101	9,000	-	-
중구	36,127	-	4,000	-	-
용산구	56,163	-	5,230	-	1,250
성동구	36,500	-	-	-	-
광진구	75,200	-	4,000	-	-
동대문구	90,292	7,900	-	1,177	-
종량구	61,941	-	-	-	-
성북구	58,030	2,943	4,000	94	-
강북구	30,732	-	4,000	-	-
도봉구	65,850	-	4,000	-	-
노원구	14,925	-	4,000	-	-
은평구	55,400	-	4,000	-	-
서대문구	96,097	-	8,000	-	-
양천구	40,850	-	-	1,400	-
강서구	59,106	-	4,000	-	-
구로구	92,016	-	-	-	-
금천구	73,489	-	25,999	-	-
영등포구	68,364	2,228	6,914	-	-
동작구	139,600	-	84,173	-	-
관악구	148,100	24,577	36,692	-	-
서초구	32,700	-	400	-	-
강남구	85,696	-	-	-	-
송파구	68,400	-	21,940	2,376	-
강동구	44,802	-	4,000	-	-
계	1,580,315	48,749	234,348	5,047	1,250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착한가격업소” 표찰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